공고 제 3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01월 27일

자양제4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황 *호	황 *호 1967-09-01	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7길 (자양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1-12
김 *	김 * 1947-05-12	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0가길 (자양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1-12